

[별표 3의2] <개정 2014.7.3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제3조제3항 관련)

분 류	품 목
1.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 없음
2. 전기기기용 스위치	대상 없음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 없음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대상 없음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대상 없음
6. 절연변압기	대상 없음
7. 전기기기	가. 감자 탈피기(脫皮機) 나. 전기 정미기(精米機) 다. 전기 빵 자르개 라. 애완동물 목욕기 마. 전기주류숙성기 바. 전기시계 사.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아. 전기분수기 자. 투영기 차. 착유기(搾油機) 카. 보풀제거기 타. 새싹 및 콩나물 채배기 파. 전기 작동 도어록(door lock) 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거.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8. 전동공구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9.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가. 비디오카메라 나. 튜너 다. 라디오수신기 라. 리시버 마. 음성기록계 바. 음성플레이어 사. 위성방송수신기 아. 비디오폰 자. 음질조절기 카. 신호변환장치

	<p>           차. 콤프레서 게이트            타. 전자시계            파. CCTV 카메라            하.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거. 영상기록계            너. A/V신호수신기            더. CATV방송수신기            러. 턴테이블            머. 모듈레이터            버. 비디오게임기구(텔레비전 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거나 브라운관, 액정표시장치 또는 플라즈마 표시를 갖는 구조인 것만 해당된다)            서.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어. 앰프            저. 그 밖에 가목부터 어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p>
10. 정보·통신·사무기기	<p>           가. 스캐너            나. 지폐계수기            다. 금전등록기            라. 어학실습기            마. 전자철판 및 보드            바. 동전계수기            사. 전동타자기            아. 전기소자기            자. 교통카드 충전기            차. 번호표 발행기            카. 생활무선국용 무전기(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 기기를 포함한다)            타. 음성·음향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용 무선기기(무선마이크 시스템, 무선스피커 시스템을 포함한다)            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단말장치(IPTV용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디지털 CATV용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거.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지상파 디지털 TV용 셋톱박스, D/A용 셋톱박스, A/V신호수신기 등을 말한다)            너. A/D 및 D/A 신호변환기(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방송신호로 변환해 주는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p>

	<p>더.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셋톱박스 등을 말한다)</p> <p>러. 재단기</p> <p>머. 실물화상기</p> <p>버. 입체영상기</p> <p>서.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기기(휴대형 통신기기만 해당한다)</p> <p>저. 그 밖에 가목부터 서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p>
	<p>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p>
<p>11. 조명기기</p>	<p>형광램프용 스타터(starter)</p>